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
------	-----

제출년월일 : 200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령의 개정(2005년12월31일 법률 제7843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종세인 주택분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하도록 납기를 조정하고, 공매로 인도받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소액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근거조문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문 수정(안 제13조)
- 나. 납세자가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신고 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안 제22조 제1항)
- 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례 조문이 「지방세법」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안 제26조)
- 라. 주택분 재산세와 종세인 주택분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하도록 납기를 조정(안 제27조의 2, 안 제96조)
- 마.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던 규정을 공매받은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8조)
- 바.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조항 삭제(안 제62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나. 관계법령 : 별첨
-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실시(2006.3.10 ~ 3.28)결과,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를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에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를 "영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를 "영 제1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 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켈런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켈런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런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6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1,0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단, 현장에서 무선카드수납기로 수납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p> <p>②영 제9조제2항제2호</p>
<p>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 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영 제11조</p>
<p>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서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p>	<p>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p>
<p>제26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6조 <삭제></p>
<p>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생략</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p> <p>②-----</p> <p>1.-----</p> <p>2.-----</p> <p>3.-----</p> <p>--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제38조 【납세의무자】 ①<생략> ②<생략> <제3항 신설></p> <p>제62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 담배</p> <p>가. 제1종 쫄면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쫄면은 20개비당 40원</p> <p>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p> <p>다. 제3종 엽捲烟 50그램당 2,600원</p> <p>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p> <p>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p> <p>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p> <p>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p> <p>1. 쫄면 : 20개비당 100원</p> <p>2. 각련 : 50그램당 100원</p> <p>제96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①<생략>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단서조항신설></p>	<p>제38조 【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62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담배</p> <p>가. 제1종 쫄면 20개비당 641원</p> <p>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p> <p>다. 제3종 엽捲烟 50그램당 3,270원</p> <p>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p> <p>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p> <p>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p> <p>②<삭제></p> <p>제96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 1. ----- 2. ----- 3. ----- ----- -----</p> <p>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p>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및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2항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2005.12.31 단서개정)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2005.12.31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2005.12.31 신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005.1.5개정)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세액	배 기 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11.22, 2004.12.6,2005.9.1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생략>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